



이우시 링루 런지아팡 유한공사와 스어이권의 상업비밀 침해 경업제한 분쟁 사건

2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저장성 금화시 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8)金中民三初字第31号
판결 일자	2008년 3월 17일	판결 결과	당사자 화해
원고	이우시 링루 런지아팡 유한공사		
피고	1. 쉬이권, 2. 동양시 명야지아팡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영업비밀	상품 정보 및 고객 정보		
키워드 (Keyword)	화해(调解), 고객 정보(客户信息)		

02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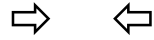
원고 이우시 링루 런지아팡 유한공사(이하 '이우시 공사')의 업무 경리이던 피고 쉬이권이 공사를 사직 후, 공사의 상품정보 및 고객 정보를 가지고 피고 동양시 명야지아팡 유한공사(이하 '명야지아팡 공사')로 이직하였다.

이우시 공사는 쉬이권과 동양시 명야지아팡 공사에 대해서 상업비밀 침해 및 경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심리 과정 중, 법원의 주도로 조정하였다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고



피고

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

(나타나지 않음)

04 판결 요지

원고의 상품재고를 피고들이 인수하고, 소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05 Key Point

상업비밀 관련 중국 판결문 검색 과정에서 조정서가 상당히 많았다. 조정서에는 당사자 간에 법리적인 쟁점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선정에서 배제하고, 정식의 판결서 위주로 선정하였다. 본 조정서는 비교적 사건의 경위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 법원에서 조정방식의 분쟁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선정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선호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을 장려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법적 분쟁을 대처함에 있어, 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